



01

출입국관리사무소

2007년 2월 11일 새벽 4시경 외국인 보호시설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등록관리 및 출입국 사범 단속, 심사,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보호 및 퇴거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화재사고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 106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청사동 3층 보호실에 보호 중이던 구금자가 라이터를 몰래 반입하여 방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레탄 소재의 바닥재 등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화염과 유독가스가 강하게 발생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보호실을 포함하여 인접한 보호실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고 27명의 사상자(사망 10명, 부상 17명)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강제퇴거(출국)조치를 명령받은 중국인 25명(조선족 포함), 우즈베크인 1명, 스리랑카인 1명 등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당시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 유사사고

-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펴(Schiphol) 국제공항 외국인보호소(구치소) 화재 (2005.10.27. 0시, 사망 11명, 부상 15명)

1. 일반사항

- 소재지 : 전남 여수
- 화재일시 : 2007년 02월 11일(일요일) 03시 55분
- 발화장소 : 3층 304호 보호실
- 재산피해 : 500만원 (3층 내부 123.6㎡ 소손, 4층 일부 연기 피해)
- 인명피해 : 27명(사망 10명, 부상 17명)
- 발화원인 : 방화

2. 건물 현황

2.1 건물 개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2,892㎡ 대지에 청사동, 비상대기소 및 정문초소 등 3개동이 있으며, 2004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전남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관리하고, 주로 남부지방의 출입국 사범단속, 내외국인과 선박의 출입국 심사,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보호 및 퇴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청사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 지붕으로서 1, 2층은 직원근무장소, 3, 4층은 보호외국인의 관리시설로서, 화재사고 당시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3층에 남자 51명, 4층에 여자 4명 등 총 55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사진 1.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경

표 1. 청사동 건물 현황

용도	층	면적(㎡)	비고
기계, 전기실	지하 1층	651	
사무실	1층	1,984	관리, 심사, 경비과
“	2층	1,820	상황실
남자 보호실	3층	1,201	
여자 보호실	4층	945	
물탱크실	옥상	66	
계		6,667	

화재가 발생한 3층은 보호시설이 휴게실 등 기타 용도와는 분리되어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단체 보호실 6개실이 중앙의 감시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3개실씩 분산배치되고 중앙 후면에는 1명을 수용하는 6개의 독거실이 있었다.

각 보호실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철창이 감시실측 방향에 설치되고 보호실 뒤쪽은 세면장과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보호실 안에는 의류와 TV가 수납된 목재로 된 사물함이 있었다. 감시실을 중심으로 보호실 둘레 3면에는 복도가 만들어져 있고, 건물 양측면에는 직통계단 2개가 위치해 있다.



그림 1. 3층 평면 및 화재상황도

2.2 방재시설 및 관리체제

각층에는 ABC급 분말소화기가 복도 및 거실에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으나 보호실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배치하지 않았다.

옥내소화전설비는 3층에 소화전방수구 3개 등 청사동에 총 18개가 설치되어 전 층이 수평거리 25m 이내로 포용되었으며, 수원이나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사고발생 이전 소방검사에서 평가되었다.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가 전층에 설치되었으며, 3층에는 발신기 4개와 화재감지기, 스피커가 설치되었고, 설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CCTV 감시카메라는 3층 단체보호실에 각 1개씩, 복도에 2개 등 총 8개가 설치되어 관리자가 2층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영상감시를 할 수 있었고, 3층 중앙의 감시실에서 경비원이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화재당시에는 4층 보호시설에 여자 경비원 1명, 3층 보호시설 복도 및 감시실에 각 1명 경비원 2명, 2층 상황실에 출입국관리소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사진 2. 최초 발화 지점(304호) 바닥 (사물함과 TV가 있던 위치)

3. 화재상황

사진 2.와 같이 304호실의 사물함이 있던 자리가 가장 뚜렷한 소손 흔적을 나타냈고, 그 지점의 상부 천장(사진 3.)도 열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사진 4.에 나타난 것처럼 306호실에서 304호실 쪽으로 가까울수록 소손의 흔적이 심한 것을 볼 때 3층 304호 단체보호실이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점으로 판단된다. 최초 304호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목재 사물함과 바닥의 폴리우레탄 매트를 연소시킨 후 유독가스 및 연기가 인접 단체보호실을 통하여 전 층으로 확산되었다.



사진 3. 사물함 상단의 천장 소손(304호)

화재를 인지한 경비원 2명이 보호실 철창을 개방하지 않고 밖에서 소화기로 진화했으나 실패하자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으며, 소방차 27대와 소방관 120여명이 투입되어 발화 후 3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초동진화를 하였으며, 초동진화 후 30분 정도 후에야 완전하게 진화되었다.

최초 진화에 실패한 경비원이 2층 사무실에서 열쇠를 가지고 3층으로 올라 왔을 때는 열기가 너무 강하고

유독가스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워 가장 가까운 301호의 철창만 개방하고 나머지 5개실의 잠금장치는 해제하지 못했다.

4. 화재 원인

경찰청 수사발표에 따르면, 라이터를 이용하여 점화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화재로 사망한 김 모씨(남, 39세)가 화재 직전에 CCTV 감시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행동을 하였고 현금 13만원을 몸에 숨기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김 모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하였다.

경찰은 304호에 수용된 김 모씨는 사고 전날에도 행패를 부렸으며, 사고 직전에는 물에 젖은 휴지로 3회, 치약으로 1회에 걸쳐 CCTV 감시카메라 렌즈를 가렸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발화지점인 304호 거실에 혼자만 있었다는 것이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의 진술과 CCTV 관독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찰은 화재당시 304호실에 함께 보호 중이던 외국인 2명의 생존자로부터 “김 모씨가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불이 더 잘 타도록 폴리우레탄 매트를 올려 불길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목격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아울러 현장감식과정에서 304호실에서 발화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ライター 2개가 발견되었고, 정밀감정결과 발화지점은 304호실 사물함에 설치된 TV 앞부분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지점은 김모씨가 혼자 있었던 장소로서 화재현장에는 발열, 발화될 만한 도구가 없어 누전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고, 인적화원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회보 받아 김 모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김 모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한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범행동기로는 김모씨가 다른 보호외국인과는 달리 외출할 수 있는 상태의 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현금 13만원을 휴대한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한 혼란을 틈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벗어나려 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 4. 306호(전면)보다 304호(후면)가 소손정도 심함



사진 5. 304호 감시카메라 소손 흔적

5. 피해상황

3층 내부 148㎡가 소손되고, 3층과 4층 일부가 연기로 그을려 재산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화재에 영향을 준 주요 가연물은 목재 사물함(사진 2., 6. 참조)과 사물함에 수납된 의류와 책자, 그리고 바닥 장식재로 사용된 폴리우레탄 매트이다.

3층 보호시설은 공간의 크기에 비하여 화재하중은 높지 않았으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첫째, 바닥재로 사용된 폴리우레탄 매트와 형광등

커버(폴리비닐)에서 일산화탄소와 시안화수소 등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였고, 둘째 화재초기에 수용인의 도주를 우려하여 관리인이 창살의 잠금장치를 즉시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에 노출된 수용인들이 희생자가 되었다.



사진 6. 사물함이 있던 위치(화재발생 전)

6. 문제점 및 대책

6.1 관리적인 측면

많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보호, 감호시설의 화재는 수용인에 의한 방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용인이 라이터와 같은 점화원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방화자가 누차에 걸쳐 CCTV 렌즈에 젖은 화장지를 붙이는 것을 목격한 3층 감시실의 경비원이 적절한 조치와 철저한 감시를 했더라면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화재 당시 2층 상황실에 있었던 2명의 근무자는 다른 자리에서 독서와 인터넷을 하느라 보호시설에 대한 CCTV 모니터 감시를 소홀히 하여 화재사실의 인지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직후에는 보호외국인의 도주방지에만 치중한 나머지 301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문 개방을 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상황실장 또한 화재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용인의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늦장 대처를 함으로써 화재상황을 악화시켜 화재당시의 근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다.

본 사고는 보호시설의 경비와 관리를 담당하는 근무자가 평상시 보안 및 화재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비상시 수용인의 피난유도와 소화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아 철저하게 근무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

6.2 시설적인 측면

- (1) 교정시설에서의 화재사고 대부분은 방화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착화가 용이한 가연성 침구류는 방염제품으로 사용하고, 사물함과 같은 가연재료는 불연재료로 교체하며, 특히 폴리우레탄 매트와 같이 연소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한다.
- (2) 화재를 초기에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보호실과 복도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소방시설 설치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정시설 추가

별표4 [시행 2008.8.16.] [대통령령 제20610호, 2008.2.15.]

경보설비 중 4.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다.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4년 10월 현재

별표5 [시행 2014.7.8.] [대통령령 제25444호, 2014.7.7.]

2. 경보설비 중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3) 교정 및 군사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 (3) 화재 발생시 신체 제약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없는 교도소, 외국인 보호시설과 같은 교정시설의 거주 장소에는 자동식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제어 및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소방시설 설치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정시설 추가

별표4 [시행 2008.8.16.] [대통령령 제20610호, 2008.2.15., 일부개정]

소화설비 중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카.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 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2014년 10월 현재

별표5 [시행 2014.7.8.] [대통령령 제25444호, 2014.7.7., 일부개정]

1. 소화설비 중 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급격한 화재성장을 고려하여 출입문 개폐장치는 수동과 원격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개폐될 수 있도록 하고 열쇠와 같은 잠금 해제기구는 보호실로부터 인접하고 접근이 통제되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한다.